

수요관리
국내이슈
기후부,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및 LPG 사용가구 지원금액 확대 발표

- ◆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사용가구 지원 금액을 평균 36.7만 원→51.4만 원(+14.7만 원)으로 확대
- ◆ 2026년 1월 22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수령 후 사용

□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 확대 발표

- (배경) 고환율에 따른 연료비 부담 증가에 대응해 도기사스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등유·LPG가구 추가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강화
 - 도시가스와 달리 등유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에너지공급사의 요금할인이 없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싸 취약계층 중에서도 더욱 소외됨
-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 가구에 기존 평균 36.7만 원인 지원금액을 51.4만 원까지 확대 지원
 - (대상) 등유와 액화석유가스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가 대상이며,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 대상을 개별 통보할 예정
 - (지원) 추가 지원 금액인 14.7만 원이 담겨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대상자는 '26년 1월 22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선불 카드를 수령

구분	지원단위	지원금액	이용권 형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1인	147,000원	선불카드
	2인		
	3인		
	4인 이상		

- (사용) '26. 1. 22. ~ '26. 5. 25.
- (체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가 지원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및 우편을 발송하고 수급자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담당공무원이 수급자 확인 및 선불카드 기명화 작업 후 카드 배부

추가지원 대상안내	실물카드 방문수령	선불카드 기명화 및 배부	선불카드 사용
에너지공단→수급자 ('26년 1월)	수급자→읍면동 ('26년 1월~2월)	읍면동→수급자 ('26년 1월~2월)	수급자 ('26년 1월~5월)

* 수급자는 선불카드 수령 후 익일부터 사용 가능

- (기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저소득층효율 개선 추진
 - 또한, 취약계층이 추가 지원금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

- *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집배원이 직접 찾아가서 수령 방법과 지원금 이용 방식 등을 안내할 예정
- 향후, 등유·액화 석유가스 가구에는 내년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
- * 기초수급가구 등 저소득층에 벽·바닥 단열공사, 창호개선, 고효율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열성능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

□ [참고]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 (내용)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가구(2자녀)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 세대 평균 36.7만 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 >

세대 평균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367,000원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전체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지원방법)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
 -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를 자유롭게 구입
 - (요금차감)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 사용기간

구 분	지원 방식	사용기간	적용 가능 에너지원
하절기	요금차감	'25. 7. 1. ~ '25. 9. 30.	▶ 전기
동절기	요금차감	'25. 10. 1. ~ '26. 5. 25.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실물카드	'25. 10. 13. ~ '26. 5. 25.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요금차감 방식은 요금 고지서 발행일, 실물카드 방식은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으로 지원

- (지원체계) 신청·접수(행정복지센터)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자 등) → 바우처 사용(수급자) → 정산(전담기관 등)

<출처>

1. 수요관리 부문

- 국내이슈 <기후부,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가구 지원금액 확대 발표>
 - 에너지바우처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 수급 가구에 지원금 51.4만 원으로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12. 29)
 -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시행(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12. 20)